

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HDC뉴패러다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2. 효력발생일 : 2021.01.29.
3. 주요 정정사항 :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<u>예탁</u>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1. ~ 13. <생략></p> <p>② ~ ⑤ <생략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<u>전자등록</u>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13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~ ⑤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삭제></p> <p>⑧ <생략>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삭제></p> <p>⑧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생략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</p>	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</p>

다. ③ ~ ④ <생략>	지 아니다. ③ ~ ④ <현행과 같음>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생략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~ ③ <생략>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 <생략>	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 <현행과 같음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⑥ <생략>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⑨ ~ ⑩ <생략>	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⑥ <현행과 같음>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⑨ ~ ⑩ <현행과 같음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u><신설></u>	<u>부칙</u>
	이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 : 운용역 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운용전문인력 변경	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<u>홍호덕</u> → <u>박정훈</u>)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옥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- 투자대상	-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		<p>5. 집합투자증권</p> <p>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. <이하 생략></p>	<p>5. 집합투자증권</p> <p>○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 <이하 생략>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</p>	<p><u>(5)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</u></p> <p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</p>	<p><u>(5)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</u></p> <p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이하 삭제>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 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		<p>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...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<신 설></p> 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</p> <p>②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⑤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로 평가</p>	<p>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...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<u>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.</u></p> 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</p> <p>②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u>파생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)</u>에서 공표하는 <u>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⑤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로 평가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<p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수익자 총회 등</p> <p>(2)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	<p>자본시장법(시행령)개정사항 반영</p>	<p>②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	<p>②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

(5) 투자신탁의 합병		-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<이하 생략>	-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<이하 현행과 같음>
2.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	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	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..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생략>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..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생략>	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..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..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
[간이투자설명서] : 운용역 변경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정관욱

<끝>.